

「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제1조~제4조 (생략)	제1조~제4조 (현행과 같음)	
제5조(특별지원부문) ① (생략) 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(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)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하되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 ③~④ (생략)	제5조(특별지원부문) ① (현행과 같음) 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(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)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하되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 ③~④ (현행과 같음)	- 특별지원부문 지원기간 연장
제6조~제14조 (생략)	제6조~제14조 (현행과 같음)	
<신설>	부 칙 <2021. 8. .> 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	- 부칙 신설 - 시행일 명시 - 경과조치 마련
<별표 1> ~ <별표 2> (생략)	<별표 1> ~ <별표 2> (현행과 같음)	
<별지 제1호 서식> ~ <별지 제6호 서식> (생략)	<별지 제1호 서식> ~ <별지 제6호 서식> (현행과 같음)	